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4
------	-----

2022. 9. 22.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 9. 2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황보연 경제정책실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성수의 소셜벤처기관 및 임팩트 투자사가 집적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도시문제해결·ESG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기존의 성수IT종합센터를 2020년 7월부터 「서울창업허브 성수」로 재개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 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서울창업허브 성수
소 재 지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아크밸리
시설규모	연면적 5,492.98㎡ (지상 2~4층)
시설용도	창업지원시설(입주공간, 보육 특화공간, 공유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3.1.1.~2025.12.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501백만원(2022년 예산)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011. 2.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
 - 2012. 10. : 제241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13.1.~' 15.7.)
 - 2015. 6. : 제261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7.~' 17.12.)
 - 2017. 11. : 제277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1.~' 20.12.)
 - 2020. 9. :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21.1.~' 22.12.)
 - 2022. 6.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022. 7.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의결(동의)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도시문제해결·ESG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문제해결·ESG 창업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
 - 기업의 중요지표로 급부상한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적 역량 필요성이 증대함
 - 이에 다양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문제해결·ESG 분야 창업기업 보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창업허브 성수의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도시문제해결·ESG 분야 우수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민간 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 관리,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 임팩트 투자 및 ESG 생태계 활성화
 - 국내외 VC 및 액셀러레이터 등 협력을 통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 인근 주요 창업 지원 시설과의 협력·연계 방안 추진
- 서울창업허브 성수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기타 위·수탁사무와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2. 7. 20.)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창업 지원시설인 ‘서울창업허브 성수’의 민간위탁 만료 기한(2022.12.31.)이 도래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서울창업허브 성수 현황

- 서울창업허브 성수(이하 “성수허브”)는 성수 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2010.1.)²⁾에 따라 IT, R&D 분야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설로 개관(2011.7.)하였다가 도시문제해결과 ESG³⁾ 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거점 시설로 기능을 전환하고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2020.6.24.).
 - 기업 입주 사무실(20개실),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 등 스타트업 업무 수행과 커뮤니티,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수탁 운영 중임.

1) 지난해 9월 30일 개정된 조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의회 동의 경과기간(6년)에 상관없이 재위탁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서울의 산업입지 공간을 회복하고 권장업종의 집중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총 12개 지구(성수 IT,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 중구 금융, 여의도 금융, 서초R&D, 동대문 한방, 중랑면목 패션, 중구 디자인패션, 중구 인쇄, 강남 디자인, 마포 웨딩)를 지정한 바 있음.

3)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

<성수허브 운영 현황>

- 위 치 :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아크밸리 2~4층(5,492㎡)
- 개 관 일 : 2020. 7. 6(최초 2011.7.14.)
- 임차기간 : 5년('19.7~'24.6), 임차보증금 157억원
- 공간구성 : 입주공간 20실, 비즈니스라운지, 콜라보그라운드, 회의실 등
- '22년예산 : 15억 1백만원
-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12.31.
- 운영인력 : 6명(팀장1, 책임3, 선임2)
- 주요사무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앱 테스트베드 운영 등



- 최근 가치소비에 대한 인식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2030년부터 코스피 상장기업의 ESG 공시가 전면 의무화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기준 역시 ESG 경영지표가 주요하게 작동되면서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ESG 경영 추진 동기가 강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성수허브는 쓰레기 문제, 장애인 이동권, ESG 플랫폼 기술 보유 등 ESG 관련 분야 스타트업에 우선적으로 입주시설을 제공하고, ESG 분야 기술 소스가 필요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술을 매칭해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 성수허브 입주기업 현황 >

연번	기업명	분야	사업내용	매출액 (백만원)
1	(주) 갈 다	E(환경)	대형폐기물 및 중고 재활용 중개 서비스	375
2	(주) 더 웨 이 브 톡	S(안전)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박테리아 등 미생물의 유무를 빠르게 탐지	4.4
3	(주) 리 베 스토티	E(환경)	플렉서블 배터리 기술 개발	689
4	(주) 마 이 비	S(건강)	웰니스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3741
5	(주) 위 플 랫	E(환경)	지능형 누수관리 플랫폼	543.7
6	(주) 플 코 스 킨	S(건강)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 개발	308
7	(주) 홈 리 에 종	S(삶의질향상)	디자인 핸드링 시스템 기반의 홈스타일링 플랫폼	2,621
8	(주) 워 커 맨	S(삶의질향상)	빅데이터 활용 유지보수 플랫폼	2,778
9	(주) 키 두	S(교육)	유아 중심의 UX 콘텐츠 키드 솔루션 개발	727
10	(주) 스테 이 즈	S(주거문제해결)	2030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	809
11	(주) 소리를보는통로	S(사회적약자)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음성인식 실시간 자막 서비스	584
12	(주) 해 피 문 데 이	S(건강)	월경용품 제작 및 페미닌 헬스케어 서비스	5,285
13	(주) 블 루 레 오	S(사회적약자)	양치가 어려운 약자를 위한 세계 최초 전동흡입칫솔 및 디바이스 연계 구강관리 토털 솔루션	963
14	(주) 하 이 어 엑 스	S(고용확대)	언택트 오프라인 매장 업무관리 서비스	27.2
15	(주) 딜 리 버 리 랩	S(공급망구축)	외식업 식자재 관리 매니저 '오더 히어로'	2,800
16	(주) 리 코	E(환경)	자체 폐기물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투명한 처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서비스를 제공	572
17	(주) 팩 토 리 얼	S(공급망구축)	제품 제조 단골공장 팩토리얼 플랫폼	207
18	(주) 티 에 스 피 바 이 오 캠	E(환경)	친환경 바이오 발포체 및 시트 개발	5.4
19	(주) 엠지솔루션스	S(건강)	근골격계 건강만성질환을 검사용 3D 체형 분석기	352
합 계				23,391

- 올해부터는 ESG 경영 관련 필요성은 공감하나 체계적인 정보와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ESG 스타트업 경영 대응 진단 컨설팅 프로그램 개요 >

가. 프로그램 개요

- 추진목적
 - ESG 대응을 위한 맞춤형 진단 및 실효성을 담보하는 컨설팅 필요
 - ESG 경영 확산 추세에 따른 ESG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 투자 의사결정 단계에서 ESG 요소를 적극 반영하는 VC 증가에 따른 투자역량 대응 제고
- 대상 및 규모 : 창업허브 입주기업 및 우수기업 10개사 내외
 - ※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규모 내에서 지원 예정
- 지원 내용
 - ESG 경영원칙 수립 및 ESG 요소 반영을 위한 ‘전문가 진단 컨설팅’ 제공
 - ESG 경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향후 사업 홍보, IR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별 ‘진단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 추진절차(안)

진단기업	심층 진단	진단결과 분석
1. ESG 진단 신청 2. 기업소개서 등 제공 3. 스타트업 특화 진단모델 수립	4. ESG 전문가-기업 심층인터뷰 5. ESG 진단도구를 활용한 종합 진단 6. 정성 요인 진단	7. 진단결과 분석 8. 종합 시사점 도출 9. 종합 제언
진단지 개발 및 기업현황 조사	기업 방문 및 현장 진단	진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8월	9~10월	10월

- 추진현황
 - 신청기업(10개) 대상 프로그램 추진중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여부

- 서울시는 성수허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 성수허브는 도시환경문제를 포함한 ESG 분야 창업기업 발굴·보육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ESG 경영 체계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급변하는 창업 환경과 ESG 분야의 세계적 변화 추이에 맞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성수허브의 민간위탁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사업 참여 기업은 52개사, 입주기업 총매출액은 233억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이 중 7개사는 1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함.

<2021년 성수허브 핵심성과지표 실적>

핵심성과지표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사업참여기업	42개사	52개사	123.8%
매출액	65억원	233억원	358.5%
투자유치액	85억원	155억원	182.4%

- 수탁기관인 sba는 보유하고 있는 창업 노하우와 네트워크, 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⁴⁾가 발표한 ‘창업생태계를 대표하는 가장 적극적인 창업지원기관’ 2위에 선정되는 등 창업지원 운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하 “민간위탁지침”）」(2017.8.)에 ‘재계약 제한 규정’을 추가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민간위탁에 한하여 2회 이상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함⁵⁾.

4) 2013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로 50여개의 공공기관, 인터넷 기업, 이동통신사, 투자기관, 창업보육기관 등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관 협력단체로 네이버, 다음, 카카오(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SK 플래닛, 소프트뱅크 벤처스, 서울벤처인큐베이터,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등이 주요 참여사임.

- 이 지침에 따라, 시설형 민간위탁의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하나, 2회에 걸쳐 유찰되어 체결된 수의계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2회 이상 재계약이 가능함.

< 민간위탁관리지침 재계약 제한 규정 >

<p>○ 시설형 : 재계약은 1회만 가능</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 2회 이상 재계약 가능</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p> <p>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p> <p>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p> <p>3. <u>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u></p>

- 성수허브는 최초 위탁(2011년) 시 한차례의 공개입찰에서 단독응찰한 sba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민간위탁지침 개정(2017.8.) 시점 이후부터 적용된 2회 유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 그런데, 성수허브 4~5차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의뢰서(첨부자료1.)에 ‘최초위탁 2회 유찰에 따른 수의

5) 개정 이전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서는 기존 수탁업체에 대한 사업성과평가 등을 위주로 적정성평가에 거쳐 재계약 유무가 결정되었으나, 개정 이후 제한규정에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함.

계약' 으로 잘못 기재해 재계약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추진경과 >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2011. 2. : (최초협약)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수의계약) - 단독응찰에 따른 <u>수의계약</u>(입찰공고시 1개 단체 신청시 적격자심의 후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 ◦ (2차)2012. 10. : 제241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2013.1.~2015.7.) - *심의의뢰서에 최초위탁 공모때 '<u>단독응찰</u>' 로 기재 ◦ (3차)2015. 6. : 제261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2015.7.~2017.12.) - *심의의뢰서에 최초위탁 공모때 '<u>단독응찰</u>' 로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 (지침변경, 2017.8.)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2017. 11. : 제277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2018.1.~2020.12.) - *심의의뢰서에 최초위탁 공모때 '<u>2회 유찰</u>' 로 오기재 ◦ (5차)2020. 9. :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2021.1.~2022.12.) - *심의의뢰서에 최초위탁 공모때 '<u>2회 유찰</u>' 로 오기재

-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절차를 위반한 사항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요구됨.

■ 첨부자료<1>

< 성수허브 4~5차 재계약 사유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발췌

<p>재 계약 사 유 (2017년 제4차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석 (2011년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기관이 없어 2회 유찰되었음) ○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려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성수IT종합센터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함 - 또한, SBA는 서울창업허브의 운영기관으로서 허브와의 프로그램 연계, 연구 인프라 활용 등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높은 성과를 기대하며 - IT창업센터 관련 필요성·역할·기능 등 종합검토를 위해 실시한('17.4~8월) 성수IT종합센터 종합컨설팅용역 결과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함
<p>재 계약 사 유 (2020년 제5차위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시장여건 분석 (2011년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기관이 없어 2회 유찰되었음) ○ 재계약에 대한 법적근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최초 공개모집 시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에 해당</u> ○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하려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월 개관 이래 성수IT종합센터를 운영하며, IT/IoT 등 SW분야 창업보육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 (매출 135,747백만원, 고용창출 2,013명, 투자유치 10,272백만원, 지적 재산권 506건) - 서울창업허브를 위탁 운영하며 구축한 국내외 VC·AC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지원 및 글로벌 진출 도모 가능 - '20년 동북권창업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 소관 창업지원 센터(창업허브, 동북권, 성수IT)와의 연계로 체계적 스타트업 육성 가능. - 우수한 민간 투자 네트워크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로 입주기업의 총매출 및 신규 고용 확대 예상 (※ 투자 유치율 70% 이상)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4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성수의 소셜벤처기관 및 임팩트 투자사가 집적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도시문제해결·ESG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기존의 성수IT종합센터를 2020년 7월부터 「서울창업허브 성수」로 재개관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기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사업화, 판로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서울창업허브 성수
소재지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아크밸리
시설규모	연면적 5,492.98㎡ (지상 2~4층)
시설용도	창업지원시설(입주공간, 보육 특화공간, 공유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3.1.1.~2025.12.31.)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501백만원('22년 예산)

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011. 2.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협약체결
- 2012. 10. : 제241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13.1.~'15.7.)
- 2015. 6. : 제261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5.7.~'17.12.)
- 2017. 11. : 제277회 정례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8.1.~'20.12.)
- 2020. 9. : 제297회 임시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21.1.~'22.12.)
- 2022. 6. : 민간위탁 재위탁 방침 수립
- 2022. 7.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개최·의결(동의)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도시문제해결·ESG 분야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문제해결·ESG 창업기업 지원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

- 기업의 중요지표로 급부상한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의 전문적 역량 필요성이 증대함
- 이에 다양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문제해결·ESG 분야 창업기업 보육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서울창업허브 성수의 입주기업 보육 등 사업추진 전반
 - 입주기업 심사·선발 등 창업기업 보육지원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 도시문제해결·ESG 분야 우수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민간 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 성장 및 사업화 지원
 - 창업지원을 위한 행사기획, 관리, 홍보 및 교류·협력사업
- 임팩트 투자 및 ESG 생태계 활성화
 - 국내외 VC 및 액셀러레이터 등 협력을 통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 인근 주요 창업 지원 시설과의 협력·연계 방안 추진
- 서울창업허브 성수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안전대책 수립,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 등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 경비 및 시설 유지보수 총괄 등(안전점검, 보안관리 등)
- 기타 위·수탁사무와 관련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사항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2. 7. 20.)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창업정책과 동북권창업팀 이정순 (☎ 2133-4880)

서지니 (☎ 2133-4883)